

2022년도 재단법인 『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』 출연금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21년 10월 13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9월 29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9월 30일

라. 상정일자: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10.13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김철우 복지정책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설립·출연한 “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”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 출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

- 2) 출연대상: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
- 3) 출연금액: 금256,000천원
- 4) 출연시기 및 방법: 2022년 1월중 현금출연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허은옥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“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”의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,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
- 2022년도 출연금은 2억 5,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,
  - 직원 인건비로 1억 8,762만원
  -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로 6,238만원,

- 사회복지종사자 실무자교육 등 사업비로 600만원을 산정하였음

- 이는 전년도 출연금 2억 4,200만원 대비 1,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호봉승급반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액<sup>1)</sup>, 물가상승 및 예산 과목 통합<sup>2)</sup> 등에 따른 일반경비 증액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

※ 2022년도 출연금 내역 참조

-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

- 「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」은 2012년 설립 이후 나눔사업, 사회복지 실무자교육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, 재단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자원, 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, 향후 사업계획 등 2022년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※ 연도별 출연금 교부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출연금 교부액	235,000	242,000	256,000	전년도 대비 14,000천원 증액

※ 2022년도 출연금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총계	인건비	경비	사업비
2022년 (증감)	256,000 (14,000)	187,620 (9,960)	62,380 (11,040)	6,000 (△7,000)
2021년	242,000	177,660	51,340	13,000

1) 호봉승급 및 공무원 인금 인상율(1.5%) 등 반영하여 약 1,000만원 인상

2) 소모품비, 지급임차료, 지급수수료, 자산취득비, 공공요금및제세, 보험료, 수선유지비, 회의운영비, 수도광열비, 차량유지비 → 일반운영비 통합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생략**

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붙임 1)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현황 1부.  
2) 관계법령 1부.

**참고****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현황**

- 설립등기 : 2012. 12. 17. (서울시 허가 2012.12.11)
- 설립형태 : 비영리 재단법인
- 이 사 : 고건상 이사장 외 15명 (등기이사 7명, 감사 2명, 일반이사 7명)
- 기본재산 : 20억5천만원 (구 출연금 20억, 민간출연금 5천)
- 소 재 지 : 강서로5길 50 (화곡동)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
- 직 원 : 8명(이사장 1명<무보수>, 팀장 2명, 직원 5명)

※ 재단직원 5명(기간제근로자 포함, 육아휴직자 제외), 파견공무원 3명

## ○ 주요사업

-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·연계·협력에 관한 사업
-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·조정
-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-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서비스 평가
-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
-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
-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○ 예산현황

- 수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내역 \ 구분	계	출연금	이자수익	기부금	기타수익	이월금	비고
2021년	1,506,100	242,000	20,100	1,186,500	300	57,200	

- 지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내역 \ 구분	계	사업비	인건비	경비	예비비	비고
2021년	1,506,100	1,254,100	177,660	71,340	3,000	

## □ 지방재정법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**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**제20조(재정 지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

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사회복지시설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② 자원봉사센터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 개발·장려·연계·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 범위)**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「민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설립)**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**제5조(재단의 사업)**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·연계·협력에 관한 사업
2.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·조정
3.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4.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
5.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
6.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7.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**제6조(기본재산의 조성)**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**제7조(정관)**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5.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9. 사업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1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8조(임원)**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
-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, 대표이사를 겸한다.
-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,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비상근으로 한다.

**제9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10조(이사회)**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-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.
-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직원)**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**제12조(출연금의 지급)**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

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사업의 위탁)**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보다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3조의2(공무원 파견)**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**제14조(수익사업)**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마다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15조(운영재원 등)**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·이자수익금,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.

**제16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7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** ① 재단은 매년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지도감독)**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9조(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)** ① 재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정부·서울특별시·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

2.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

3.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그 밖에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**제2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